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관세청고시 제2006-16호(2006.3. 2)	관세청고시 제2013- 72호(2013.10.11)
관세청고시 제2006-36호(2006.9. 1)	관세청고시 제2014- 14호(2014. 1.24)
관세청고시 제2007-14호(2007.6. 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4- 42호(2014. 4.24)
관세청고시 제2008-21호(2008.7.15)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4-103호(2014.11.20)
관세청고시 제2009- 2호(2009.1.26)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5- 68호(2015.12.29)
관세청고시 제2009-67호(2009.8.20)	(전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6 -63호(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0-21호(2010.2.1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7- 79호(2017.12.29)
관세청고시 제2010-86호(2010.3.29)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9- 29호(2019. 7. 1)
관세청고시 제2010-81호(2010.6.1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9- 68호(2019.12.20)
관세청고시 제2012-21호(2012.10.4)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0- 08호(2020. 3. 2)
관세청고시 제2013- 45호(2013. 5.3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1- 00호(2021. 0. 0)
관세청고시 제2013- 50호(2013. 6.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_portalkor/main.do)을 말한다.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

제4조(적용대상)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① 통관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적용수량
2. 품목별 배정수량
3. 품목별 남은 적용수량

-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정보통신망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② 제1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 보완기간(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입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⑦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1.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 2의 동종·동질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관세체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세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절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수입자가 제18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다만,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작성방법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
 -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장 원산지증명

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 제22조(증명서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등”이라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대한상공회의소등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
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고의 또는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 ③ 계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2.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④ 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은 신청인이 규칙 제10조제1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0조제12항의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은 별표 2의2와 같다.

⑥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대한상공회의소등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제27조(원산지명서 입증서류) ①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
7.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 후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29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현지확인 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과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 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5.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 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

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등급 이상

4.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인도와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분 2부

2. 그 밖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분 1부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분 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인도와의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인도와의 협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정신청 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4.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 인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 베트남과의 협정
3.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8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 FTA 법령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자유무역협정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4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절 원산지관리사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원산지조사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사전심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5. 그 밖의 사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사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협정에 대해 신청한 경우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제49조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1조 <삭 제>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

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영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②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③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5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수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이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적용의 요건 충족 여부
2.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요건 충족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③ 통관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통관지세관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

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9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60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E-Mail) 또는 FAX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는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서식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79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29호(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68호(2019. 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 08호(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1-00호(2020.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 제34조제3항제6호, 제35조제3항제1호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35제4항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1항제7호, 제2항제6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000 서명

[별표 2]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 생산 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싱가포르와의 협정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별표 2의2]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물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1.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원산지 간이확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품목분류 확인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물품에서 제외합니다.
 - 가. 국내에서 반제품 및 블랭크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동 별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원산지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	1902.19-1000	국수	밀이나 옥수수, 쌀, 감자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발효하지 않은 국수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 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2	1902.19-2000	당면	감자나 고구마전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증숙 공정을 거쳐 생산	
3	1902.19-3000	냉면	전분(감자·고구마)가루에 메밀가루나 칩가루 등을 혼합하여 반죽한 면 -다만, 스프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 쌀가루, 메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4	1902.30-1010	라면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긴 즉석식품 <제외대상>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제1101호)와 전분 등으로 면을 만들고 유당(제1511호 등) 처리한 후 제조된 분말스프(제2103호)와 함께 소매포장	면발(제1902호)을 공급받아 생산시 적용 제외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밀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과자 <제외대상> -제1905.31호 스위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을 공급받아 생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비스킷*과 구분 * 가루, 설탕, 지방, 감미료 등 함량이 전중량의 50% 이상인 것(전중량 설탕10% 이상, 전중량 지방 35% 이하, 완제품의 수분12% 이상) -단 굽지 않은 반죽 상태의 생지는 제 1901호에 분류			산시 적용 제외,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 적용 제외
6	1905.90-1090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 (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제외)	곡물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기타의 베이커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또는 튀김(유당)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을 공급받아 생산시 적용 제외,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7	2005.99-1000	김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배추, 무 등 각종 야채 등을 주·부재료로 절임, 각종 양념과 버무림 과정을 거쳐 생산	
8	2008.99-5010	김	김에 기름 등을 발라 구운 조미김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제12류 해초류(김)에 기름·소금 등을 첨가하여 굽는 공정을 거쳐 생산 - 굽기(Roast) 등가공 공정 필수	‘20년 HSK 변경(개정) (제2106호 →제2008호)
9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커피 농축액을 건조·분말화한 즉석커피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9류 커피원두를 볶아서 커피 농축액을 추출한 후 동결 건조·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커피 농축액 추출 공정은 필수	인스턴트 커피(HS 2101)에 볶은 원두 커피 분말(HS 0901)을 단순 혼합한 경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우는 적용 제외
10	2208.90-4000	소주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11	2503.00-0000	황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 황은 제외]	탈황공정을 통해 얻은 정제하지 않은 황이나 증류하여 정제된 고체 또는 분말 상태의 황 <제외대상> -승화황, 침강황, 콜로이드황(제2802호) -살충제 등 소매포장 형태로 제조된 것(제3808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천연가스나 원유에서 탈황 공정을 통해 황을 생산	
12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13	2710.19-2020	제트 연료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등 유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생산 시 적용 제외
14	2710.19-3000	경유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원유가 아닌 석유조제품(2710)을 재료로 사용 시 적용 제외
15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기계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윤활유의 원료 <제외대상>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 과정에서 추출되며, 정제공정, 수소첨가 분해 또는 탈왁스(Dewaxing) 공정 등을 거쳐 생산	제2710.19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 시 적용 제외 예시) 제2719.19-5010호의 조유를 원재료로 제2710.19-5010호의 윤활기유를 생산
16	2713.20	석유역청(瀝)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한-아세안FTA	원유를 정제·감	천연아스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0000	靑)	액체나 반고체 상태의 석유 화합물		압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 원유의 증류 (distillation) 공정은 필수	팔 트 는 제2714호
17	2902.20-0000	벤젠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 : C6H6 -CAS NO.71-43-2 <제외대상> -순도 95% 미만인 것 (제2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18	2902.30-0000	톨루엔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 : C6H5CH3 -CAS NO.108-88-3 <제외대상> -순도 95% 미만인 것 (제2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콜타르를 고온 증류해서 추출한 나프타(제2707호)나 원유(제2709호)의 증류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19	2902.43-0000	파라-크실렌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 C8H10 -CAS NO.71-43-2 <제외대상> -순도 95% 미만인 것 (제270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2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페인트나 잉크의 용제, 세정제 등의 원료로 사용 -에틸렌글리콜의모노부틸에테르(CAS NO.112-07-2) -디에틸렌글리콜의모노부틸에테르(CAS NO.112-34-5)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부탄올(제2905.13)과 에틸렌옥사이드(제2910.10)를 주요원재료로 합성, 숙성, 정제/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	
21	2917.14-0000	무수말레산	무색 바늘 결정 모양으로 가소제, 폴리에스터수지, 알키드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합물(CAS NO. 108-31-6)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벤젠(제2902호)을 산화바나듐의 촉매하에 400~500°C에서 공기산화시켜 생산 2.부탄(제2711호) 또는 PA(Phthalic Anhydride) 제조 시 발생한 부산물을 정제하여 생산	말 레 산 (제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22	2917.35-0000	무수프탈산	무색바늘결정 모양으로 프탈산가소제나 도료, 폴리에스테르수지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크실렌(제2902호)을 산화바나듐, 촉매 등을	단 순 히 프 탈 산 (제2917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등의 원료로 사용 (CAS NO.85-44-9)		이용하여 산화하여 생산	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23	2917.36-1000	테레프탈산	폴리에스터섬유, PET 수지, 필름도로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주원료로 사용 (CAS NO.100-21-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원유로부터 정제된 파라크실렌(제2902호)을 주원료로 산화, 정제, 분리, 건조공정을 거쳐 제조	
24	2917.37-0000	테레프탈산 디메틸	테레프탈산에 있는 2개의 카복시기의 각 수소원자가 메틸기로 바뀐 에스터 • CAS NO.120-61-6 • 화학식 : C ₁₀ H ₁₀ O ₄ • 용도 :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나 필름 등의 원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파라자일렌(P-xylene)을 산화, 정제하여 테레프탈산을 만들고, 이를 메탄올 에스테르화 공정을 통해 제조	테레프탈산(제2917.36호)과 메탄올을 원료로 하여 완제품(제2917.37호)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25	2917.39-1000	이소프탈산	프탈산과 테레프탈산의 이성질체인 무백결정의 방향족 화합물로 알키드수지·폴리에스터수지·폴리아마이드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 (CAS NO.121-91-5)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방향족 탄화수소인 m-자일렌(제2902호)을 산화하여 생산	
26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섬유, PET수지, 필름도로 등의 주원료로 사용 (CAS NO.584-84-9)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톨루엔(제2902호)을 니트로화시켜 디니트로톨루엔(제2904호)을 제조하고 수소반응시켜 생산	
27	3005.10-9000	기타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 의료용품(소매포장 형태의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섬유나 플라스틱 재료에 약물 등을 도포한 후 일정 형상으로 절단하고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생산 -의료용품 특성이 부여되는 공정 필수	약물 이도포되지 않은 경우 제품 표시사항 등에 의료용으로 식별되는 것
28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피소재에 전사하는 방법으로 인쇄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투명 플라스틱(PET, OPP 등) 필름에 글루 등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외대상> -안료 등이 없는 금속 박 등은 제외)		과 결합시킨 안 료나 금속가루 등을 증착, 접합 하여 생산	
29	3215.19 -0000	인쇄용 잉크 (후색의것은 제외)	<제외대상> -포토레지스트 또는 카트리지에 담긴 토 너(제3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유기착색제 등을 용제나 수지 등 에 섞어 만든 전 색제에 개어 미 세하게 분산시켜 생산	잉크·필 기용 잉 크·제도 용 잉크 와 그 밖 의 잉크 를 공급 받아 카 트리지를 생산하는 경우 적 용 제외
30	3305.10 -0000	샴푸	두피, 모발세정제 <제외대상> -두피, 모발용 외에 체모나 애완용은 제 외(제33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계면활성제(알킬 황산염 등)에 기포증진제(아민 옥사이드 등), 유화제, 점증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	
31	3401.30 -0000	바디클렌저 (b o d y cleanser)	피부세정제 <제외대상> -소매용이 아닌 것(제 3402호) 또는 동물용 (제3307호) 제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유기 계면활성제 를 주 원재료로 화학재료 또는 천연재료를 사용 하여 혼합 또는 교반 과정을 거 쳐 생산	
32	3506.91 -1000	제3901호~제 3913호의 폴 리머 (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광학용 투 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 용투명 경화 성 액상접착 제(평판디스 플레이 또는 터치감지 스 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종류의 것)]	아크릴수지나 폴리머 계열의수지 등을 기본 으로 한 조제 접착제 <제외대상>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 이 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01호~제3913 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 무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33	3506.91 -9000	제3901호~제 3913호의 폴 리머	아크릴수지나 폴리머 계열의 수지 등을 기 본으로 한 조제 접착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01호~제3913 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한 접착제 [광학용 투명 접착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감지 스크린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제 <제외대상>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 이하)		무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34	3707.90-1090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또는 오엘이디 제조용은 제외)	빛에 의해 약품 내성이 변화하는 감광성 화합물 <제외대상> -회토류 등 귀금속의 염과 그 밖의 물품 (제2943호~제2846호, 제285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제29류 또는 제38류)를 사용하여 용해과정을 거쳐 생산	
35	3817.00-0000	혼합 알킬벤젠과 혼합 알킬나프탈렌 (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	알킬기가 치환된 알킬벤젠 또는 알킬나프탈렌의 혼합물 <제외대상> -이성질체 혼합물의 것(제29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원유를 통해 생산된 등유나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생산 1. 염화파라핀에 의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 2. 모노알킬벤젠의 불균화 반응 3. 선형 알킬벤젠의 알킬화 4. 올레핀에 의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	
36	3901.10-9000	기타 폴리에틸렌 (비중 0.94 미만으로 한정)	밀도가 낮은 사슬 모양의 폴리에틸렌을 펠릿(pallet) 형태로 가공한 것	한-아세안 FTA	원유에서 나프타를 분리·분해하여 에틸렌(제2711호)을 분취하고 이를 중합시켜 일차제품 형상으로 생산-중합 (polymerization) 및 성형공정 필	스크랩 (제3915호)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에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수	둘 이상 열가 소성 재료가 합된 우 에 적용 는 제외
37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 중 합 체 (SAN)	스티렌(S)에 아크릴로니트릴(A)을 중합시킨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 티 렌 (제 2902.50호)과 아크릴로니트릴(제 2926.10호)을 중합, 압출 공정을 통해 생산	
38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 중 합 체 (ABS) (일차제품의 것)	아크리로나트릴(A), 부타디엔(B), 스티렌(S) 중합시킨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단일 단량체 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40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아크릴로니트릴(제 2926.10호), 부 타 디 엔 (제 2901.24호), 스티렌(제2902.50호)을 주요 원재료로 중합공정을 거쳐 생산	
39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공 중 합 체 (일차제품의 것)	기타의 스티렌부타디엔중합체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단일 단량체 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 티 렌 (제 2902.50호)과 부 타 디 엔 (제 2901.24호)을 배합, 압출 공정을 거쳐 생산	
40	3904.22-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제외)	가소화 한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일차(블럭, 플레이크, 가루 등)제품 <제외대상> -스크랩이나 웨이스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VCM(Vinyl Chloride Monomer)을 중합하여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스크랩을 재생하여 생산	
41	3906.10-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	메타아크릴산메틸중합체 수지로 광선 투과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주요 원재료는 제29류 및 제39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트) (일차제품의 것)	율이 높음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제40류)	한-베트남 FTA	류, 제38류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중합 공정을 거쳐 생산	
42	3907.61-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점도 번호가 그램당 78밀리미터 이상인 것)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을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지로 흔히 PET라고 함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50~230℃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 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생산	
43	3907.69-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점도 번호가 그램당 78밀리미터 이상인 것 제외)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을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지로 흔히 PET라고 함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50~230℃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 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생산	
44	3909.40-0000	페놀수지 (일차제품의 것)	페놀류와 포름알데히드로 제조되는 열경화성 수지 <제외대상>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2907호의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제2912.11호)를 주요 원재료로 주반응 공정을 거쳐 생산	
45	3909.50-0000	폴리우레탄 (일차제품의 것)	고분자화합물로 탄성 섬유 (스판텍스) 원료, 바니시나 도료,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 <제외대상> -이온교환수지(제39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29류의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제3909.10호, 제3909.20호, 제3909.31호, 제3909.39호, 제3909.40호 등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46	3917.40-0000	플라스틱 연결구	조인트(joints)·엘보(elbows)·플랜지(flanges)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구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	플라스틱 연결구 반제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47	3918.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나 바닥 깔개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롤이나 타일모양으로 된 플라스틱바닥깔개 (접착성유무 불문) <제외대상> -단순절단한 직사각형 깔개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는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 속하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직물과 합지 또는 봉제 또는 라미네이팅 공정을 통해 생산, 플라스틱 일차 제품을 원재료로 성형하여 생산하여도 무방	동일 호 내의 바닥 깔개 (반제품)를 제 3920 호 또는 제 3921호의 원재료와 합지하는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48	3919.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 (롤 모양의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	<제외대상>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물품 (예: 포스트 잇) -평면모양이 아닌 것 (제392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 제품 또는 제 3920호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접착성이 있는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49	3919.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 (롤 모양의 것은 제외)	<제외대상>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물품 (예: 포스트 잇) -평면모양이 아닌 것 (제392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합지 공정을 거쳐 생산	접착성이 있는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50	3920.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에틸렌의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다른 재료로 적층,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 제품인 폴리에틸렌을 원재료로 원료배합, 압출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아 합지 공정을 통해 생산 시 적용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중합체로 만든 것)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제외
51	3920.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제38류 또는 제29류)를 사용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아 합지 공정을 통해 생산 시 적용 제외
52	3920.49-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전중량의 100분의 6 미만의 가소제를 함유)	-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 가소제 함량(6% 미만) 기준은 제3920호 소호 해설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염화비닐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염화비닐 원단에 인쇄·합지 등 단순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53	3920.51-0000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재질 외의 아크릴중합체 것)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제외대상> -외관상 시폭이5mm 이하(제39류 주10참조)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21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제 3 9 0 1 호~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54	3920.6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제외대상> -셀룰러(cellular)의 것 -외관상 시폭이 5mm이하의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폴리카보네이트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압출한 시트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적용 제외
55	3920.99-90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	폴리아세탈 수지로 만든 판·시트(sheet) -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용융(melting)·압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제외)			(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56	3921.13-0000	플라ستيك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트·필름을 주요 원재료로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공정을 거쳐 생산	
57	3921.19-1010	플라ستيك 판, 시트 등(에틸렌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이차전지 격리막 제조용의 것)	<제외대상>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 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성형하여 생산	여러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등을 적층하여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58	3921.90-1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는 제외)	제3918호~제3920호, 인조섬유를 제외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에틸렌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59	3921.90-402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연질의 것으로 셀룰러는 제외)	제3918호~제3920호, 인조섬유를 제외한 연질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판·시트·필름·박·스트립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의 정의는 제39류 주10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염화비닐 일차제품에 가소제 등을 배합하고 용융·압연·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용융(melting)·압연(rolling) 등 성형공정 필수	
60	3923.10-0000	플라ستيك으로 만든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제외대상>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제3920호(플라스틱 판·시트(sheet)·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이와 유사한 물품	(제3924호)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름·박(箔)·스트립)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	
61	3923.21-0000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대 [콘(cone)을 포함한다]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용기 <제외대상> -가정용품(제3924호) -벌크형 컨테이너(제6305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요원재료는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 속하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으로 합지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일차 제품을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하여도 무방	
62	3923.29-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 [콘(cone)도 포함한다]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것은 제외)	<제외대상>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 (제3924호)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트(제3920호), 폴리우레탄(제3909호),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 및 제3909호, 제3907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63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대상>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 (제3924호) -벌크 컨테이너 (제6305호) -신변장식용품 (제42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사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병·뚜껑·마개·캡(제3923.50호)을 공급받아 결합한 물품은 적용 제외
64	3924.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품 보관용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안료나 가소제 등을 배합한 후 용융(melting)·사출(injec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용융(melting)·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공정 필수	병·뚜껑·마개·캡(제3923.50호)을 공급받아 결합한 물품은 적용 제외
65	3926.90-9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	손톱을 연장하거나 꾸밀 때 쓰는 인조 손톱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안료나 가소제 등을 배합한 후 용융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melting)·사출(injec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용융(melting)·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공정 필수	
66	4002.11-0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로 만든 일차제품(판·시트·스트립) 형상(라텍스) *제40류 주3호 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주요 원재료로 유화제 등을 공중합하여 생산	합성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 과정만 거칠 경우 적용 제외
67	4002.20-9000	부타디엔 고무 (라텍스는 제외)	부타디엔을 중합하여 만든 합성고무 <제외대상> -가황제나 활성화제, 가소제, 안료(식별을 위한 안료 첨가는 허용) 등의 물질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부타디엔(제2901.24호)을 원재료로 중합반응 및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68	4002.59-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라텍스는 제외한다)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로 만든 일차제품형상(라텍스는 제외한다) *제40류 주3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폴리부타디엔 라텍스를 스티렌과 아크로니트릴(SAN)을 그라프팅 시키는 공정을 거쳐 생산	합성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 과정만 거칠 경우 적용 제외
69	4005.10-1000	가황하지 않은 배합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	가소제 등과 같은 배합제를 첨가한 고무 <제외대상> -재생고무(제4003호) -방직용 직물제에 고무판이 보강된 경우(제5906호)	한-중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고무(제4001호) 또는 합성고무(제4002호)와 카본블랙(제2803.00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성형, 시트냉각 공정을 거쳐 생산	
70	4009.2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판·파이프·호스(연결구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금속으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판·파이프·호스(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의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 <제외대상> -절단(세로) 길이가 판의 횡단면 치수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금속 와이어 등으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다 작은 것(예 : 이너 튜브, 제조용 튜빙)			
71	4009.31-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 (연결구를 부착한 것 제외한다)	방직용 섬유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파이프·호스(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의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 <제외대상> -절단 길이가 횡단면 치수 보다 작은 것 (예 : 이너튜브 제조용 관 등) -직조한 호스(제59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로 보강공정을 거쳐 생산	
72	4009.3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 (연결구를 부착한 것)	방직용 섬유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파이프·호스로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 <제외대상> -절단 길이가 횡단면 치수보다 작은 것 (예: 이너튜브 제조용 관 등) -직조한 호스(제59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로 보강공정을 거쳐 생산	고무 호스를 공급받아,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의 연결구 부착 작업 공정만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73	4011.10-1000	고무 타이어 [래디알 구조의 것(승용자동차용, 스테이션 왜건 과 경주자동차용 포함)]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74	4011.20-1010	고무 타이어 [버스용, 화물차용 (래디알 구조의 것으로 립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75	4011.20-1090	고무 타이어 [버스용, 화물차용 (래디알 구조의 것으로 립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제외대상>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는 역외산 타이어 반제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터 이상인 것]				제외
76	4016.93-0000	가황한 고무 제품 [개 스 킷 (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제외대상> -황의 배합률이 높은 딱딱한 경질(hard) 고무로 만든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된 반제품을 원재료로 커팅 공정 (BURR 제거 또는 불필요한 부분 제거)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77	4107.92-0000	소나 마속의 가죽 (grain split)	<제외대상> -원피(제4101호) -그레인 스플릿(제4104호) -전신(whole)가죽(제4107호) -샐미(chamois)가죽(제41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소나 마속의 원피(제4101호) 또는 유연처리된 소나 마속의 원피(제4104호)를 광물성 물질로 태닝(tanning)한 후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생산	
78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 (적층한 것은 제외)	에나멜 도료 등을 도포한 가죽 -표면 처리한 도료나 시트의 두께가 0.15m 초과하지 않을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가죽에 바니시(varnish)· 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하여 생산	
79	4805.24-9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테스트라이너(testliner) (재생라이너 판)(여러 층의 종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제외)	회수한 종지로 만든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뮤렌 과열강도 2kPa·m ² /g 이상의 것) -"재생라이너 판" 정의는 제48류 소호주 제5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7류 회수한 종지를 기계·화학적 방법으로 펄프화하고, 이를 종이(sheet) 모양으로 펠트(felt)화 시킨 후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펄프화·제지화 공정 필수	
80	4810.29-0000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지와 판지 (기계공정이거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제외대상> -전사지(제4809호), 카본지(제4809호), 오프셋인쇄용 종이(제481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찌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것)(경량의 도포한 종이는 제외)				
81	4810.92-1010	여러 겹의 종이 (제곱미터 당 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찌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82	4810.92-9000	여러 겹의 종이 (백판지와 아이보리 판지는 제외)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호, 제4705호 등)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찌서 무기물질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83	5205.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면단사[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이고 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	면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재봉사와 소매용 제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52류 면섬유를 혼타면·커딩·연조·조방·정방공정 등을 거쳐 생산 - 연조(drawing)·조방(roving)·정방(spinning) 등 방직공정 필수	소매용의 면사는 제5207호에 분류
84	5402.11-0000	아라미드로 만든 강력사	폴리아미드 재질의 강력사 (강도:단사60cN/Tex 초과, 복합사는 53cN/Tex 초과) *제11부 주6호 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 끈(제5607호), 금속드리사(제5605호)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85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강력사 (강도:단사 60cN/Tex 초과, 복합사는 53cN/Tex 초과) *제11부 주6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강력사를 공급받아 합연·와딩(winding) 공정만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 끈(제5607호), 금속드리아(제5605호) 등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86	5407.1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의 직물	-“강력사” 정의는 제11부 주 제6호 참조 -“직물” 정의는 제11부 총설(I), (C) 직물(woven fabrics)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을 방사(spinning)하여 직조하거나, 제5402호의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를 직조(weaving)하여 생산 직조(weaving)공정은 필수	
87	5407.42-0000	염색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제5407.10호부터 제5407.30호의 것을 제외한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백색제외) <제외대상> -합성스테이플사로 만든 직물 (제551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88	5407.52-0000	염색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의 염색(dyeing) 직물 <제외대상> -고강력의 타이어 코드 직물(제590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89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색실”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사) 참조 -“직물” 정의는 제11부 총설(I), (C) 직물(woven fabrics)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을 방사(spinning)하여 직조하거나, 제5402호의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를 직조(weaving)하여	고강력타이어 코드 직물은 제5902호에 분류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00분의 85 이상인 것)			생 산 직 조 (weaving)공정 필수	
90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직물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비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가 전중량의 85%이상의 표백한 직물 <제외대상> -여과포 등 기계에 사용되는 공업용의 직물(제5911호) * 표백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91	5407.61-2000	염색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가 전중량의 85%이상의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92	5407.61-4000	날염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의 날염(printing) 직물 * 날염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93	5407.69-2000	합성 필라멘트사의 염색한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초과 85%미만의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94	5407.69-4000	합성 필라멘트사의 날염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 필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초과 85%미만의 날염(printing)직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 날염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95	5407.72-0000	염색한 그 밖의 직물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제5407.10호부터 제5407.69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 (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96	5407.82-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	제5407.10호부터 제5407.69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 (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97	5407.92-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5407.10호부터 제5407.84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 (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98	5502.10-1000	재생·반(半) 합성 필라멘트 토우 (tow) (44,000데시텍스 미만인 것)	목재나 펄프 등의 섬유소를 용해하여 만든 재생·반합성필라멘트 토우 -'제55류 주1호'에서 규정한 5가지 토우의 요건 충족필요	한-아세안 FTA	초산셀룰로오스를 주원재료로 생산	
99	5503.20-1000	폴리에스테르의 섬유 (이형단면인 것) [카드 (card)·코움 (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합성 섬유사를 방적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솜모양으로 만든 섬유 (이형단면의 것*) *방사구를 원형이 아닌 Y형 등 여러 모양으로 하여 횡단면을 변형한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방사구를 통해 만들어진 인조필라멘트사를 절단한 후 토우(병합)로 묶어 섬유모양으로 생산	제5401호부터 제5406호에 해당 하는 재료를 공급받아 제전(制電: antistatic) 처리하거나, 절단 공정만 수행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하는 경우 적용 제외
100	5503.20-9000	폴리에스테르의 합성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은 제외] (이형단면인 것 제외)	합성된 스테이플섬유 중 최대 중량이 폴리에스테르에 있는 것 <제외대상> -길이가 2m를 초과 (제5501호) -카드나 코움 이상으로 처리된 것(제550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수지)을 원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101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합성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은 제외]	-“인조스테이플 섬유(단섬유)” 정의는 제55류 총설 참조	한-아세안 FTA	제39류 폴리프로필렌 일차제품을 방사(spinning)하여 토우(tow)를 만들고 권축(crimp)·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방사(spinning)·토우(tow) 공정 필수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은 제5506호에 분류
102	5503.90-00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폴리에스테르의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폴리프로필렌의 것 제외)	기타의 합성섬유사를 방적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슝모양으로 만든 섬유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공정을 거쳐 생산	제5401호부터 제5406호에 해당 하는 재료를 공급받아 제전(制電: antistatic) 처리하거나, 절단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103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인조섬유로 만든 담배 필터 -“제품” 정의는 제11부 총설(II)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 부분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아세트산셀룰로오스 일차제품을 방사하여 토우(tow)를 직접 만들거나, 제5502호 아세테이트 토우에 가스	제5502호 아세테이트 토우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 등을 첨가하여 형상을 만들고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토우(tow) 또는 "제품" 성형공정 필수	정 제품으로 인정할 만한 가공이 있어야 함
104	5607.49-0000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로프" 등의 요건은 제11부 총설(I)(B)실(yarn), "(1)총설"과 "(2)표 I" 부분 참조 <제외대상> -연마재를 도포한 것(제6805호) -포장용 끈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방사하거나 제54류 인조 필라멘트사를 합사(twist)·연선(wire stranding) 한 후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합사(twist)·연선(wire stranding) 공정 필수	
105	5807.10-1000	직조하여 생산한 레이블	상표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섬유제레이블 <제외대상> -수를 놓은 것(제5810호) -의류의 부속품 성격을 가진 견장·완장·휘장(제62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직조공정을 거쳐 생산	
106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타이어 제조 시 보강재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제외대상> -제11부 주6호의 강력사 기준 미충족 -고무로 피복·적층한 직물(제590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직조(weaving)하여 생산한 경우 -원사는 역외산 사용가능	
107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염화비닐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 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재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딱딱하지 않을 것 ※ 제59류 주2호 참조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108	5903.20-0000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방직용 섬유계 직물에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 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딱딱하지 않을 것 ※ 제59류 주2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109	5903.90-0000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폴리(염화비닐) 및 폴리우레탄의 것은 제외]	방직용 섬유계 직물에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우레탄 이외의 플라스틱 재질로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제외대상>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 목적인 경우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딱딱하지 않을 것 ※ 제59류 주2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110	6001.10-2000	인조 섬유로 만든 롱파일(long pile) 편물	합성섬유로 만든 롱파일(long pile) 편물 <제외대상> -파일직물(제5801호), 테리 타올지와 테리 직물(제5802호), 터프트(tuft)한 직물(제5802호),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 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펠프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기모나 루프를 형성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11	6001.21-0000	면으로 만든 루프 파일(looped pile) 편물	면(최대중량)으로 만든 루프(loop) 상의 편물 <제외대상> -파일직물(제5801호) -테리 타올지와 테리 직물(제5802호) -터프트(tuft)한 직물(제5802호)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 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섬유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기모나 루프를 형성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2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합성섬유(최대중량)로 만든 루프(loop)상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펠프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루프 등을 형성하고 염색 등의 공정을 거친 것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3	6001.92-0000	기타 편물(인조섬유로 만든 것)	롱파일, 루프파일을 제외한 기타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펠프 등을 편물기계로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4	6004.10-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가 함량이 5% 미만 -제품 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사 또는 인조섬유사를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5	6004.90-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고무사의 함유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사 또는 인조섬유사를 편직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116	6005.35-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직물류 (염색한 것) (중량이 1제곱미터당 30그램 이상 55그램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당 20홀 이상 100홀 이하인 폴리에틸렌모노필라멘트 또는 폴리에스테르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	합성섬유사(최대중량을 세로방향으로 공급하여 고리끼리 연결하는 사다리 꿰매기형의 경편직물(warp knit fabrics) <제외대상> -과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 등을 제직하여 직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7	6005.36-0000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류(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경편직(warp knits)” 정의는 제60류 총설(A)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 (II) 부분 참조 -“표백”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마)목 참조 <제외대상> -편직이 아닌 경사나 위사를 교차시켜 제직한 직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54류 합성필라멘트사를 편직(knitting)하여 표백·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편직(knitting)·재단 공정은 필수 -원사는 역외산 가능	편물을 공급받아 표백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8	6005.37-0000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류(염색한 것)	-“경편직(warp knits)” 정의는 제60류 총설(A)메리야스 편물(knitted fabrics) (II) 부분 참조 -“염색한 직물”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제1호(바)목 참조 <제외대상> -경사나 위사를 교차시켜 제직한 직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54류 합성필라멘트사를 편직(knitting)한 후 염색·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 편직(knitting)·재단·염색공정은 필수 -원사는 역외산 가능	편물을 공급받아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19	6006.22	면으로 만든	면사(최대중량)를 한	한-아세안 FTA,	면사 등을 편직	염색공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가닥의 실로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베트남 FTA	하여 편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20	6006.23-0000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서로 다른 색실의 것)	면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서로 다른 색의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어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121	6006.24-0000	면으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날염한 것)	면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어 생산하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 증명 적용 제외
122	6006.3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 증명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23	6006.34-0000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 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 등을 편직기계를 이용해 직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24	6006.42-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재생·반합성 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산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25	6006.44-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 것)	재생·반합성 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26	6006.90-0000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기타의 것)	기타 재질(양모, 면, 합성섬유, 재생섬유 제외)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파일편물(제6001호) -폭이 30cm 이하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기타 재질(양모, 면, 합성 섬유, 재생섬유제외)의사를 편직하여 편물을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가능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것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이상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127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칩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편물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장갑으로 겉면이 도포된 것 <제외대상> -모피나 인조모피 재질(제43류) -유아용 장갑(제6111호) -편물제가 아닌 것(제6216호) -마사지, 화장용 마찰 장갑(제6302호)	한-중 FTA, 한-인도 CEPA	면사 등을 편직 기계를 이용해 편성 후 장갑을 만들고 표면에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장갑을 공급받아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도포 칩투 시키는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28	6307.10-0000	마루뒹이포·접시뒹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렌즈의 먼지나 얼룩을 닦기 위한 방직용 섬유제품 -"제품" 정의는 제11부 총설(II)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 부분 참조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제52류 면사나 제54류 인조 필라멘트사를 직접 직조(weaving)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직조된 직물을 특정 모양으로 재단·봉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재단·봉제 등 "제품" 공정 필수	직조된 원단에 후가공처리 등 단순공정만 하는 경우 적용 제외
129	6309.00-0000	중고 의류	사용한 흔적이 명확한 의류나 의류의 부속품(예 : 스카프, 장갑 등), 가정용 실내용품(예 : 커튼, 테이블보 등) <제외대상> -양탄자, 바닥깔개(제5701~5703호) -매트리스나 누비이불 등(제9404호) -방수포나 텐트 등(제6306호) -석면 재질의 것(제681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국내에서 수집된 것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의류는 적용 제외
130	6909.12-0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것)	"모스 경도 9 이상" 정의는 제6909호 소호해설 부분 참조 <제외대상> -그라인딩 휠(제6804호)내화 도자제(제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28류 산화알루미늄이나 탄화규소 등의 원료를 배합한 후 성형·소결(sintering)·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6903호) -서멧 제품(제8113호)		합·성형·소결 (sintering) 공정 필수	
131	7006.00 -4000	가공한 유리 시트 (액정 디스플레이용)	제7003호~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 처리한 유리 <제외대상> -유리에 다른 재료(목 재· 금속 등)가 결합 된 제품(예: 사진틀, 문자판) -안전유리(제7007호) -유리제 복층절연유닛 (제7008호) -거울형상의 유리(제 7009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003호·제7004 호·제7005호의 유리를 주요 원 재료로 다음의 가공 중 하나 이 상을 거친 경우 1.평면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 곡면한 것 2.가장자리를 가 공한 유리[연마 한것·광택을 낸 것·둥글게한 것· 노치한 것 (notched)·모따 기한 것 (chamfered)·사 각지게 한 것 (bevelled)·프로 파일한 것 (profiled)등 3.천공(穿孔)하거 나 홈이 파진 공 정 4.제조 후 표면 가공을 한 유리 (예시 : 불투명 처리, 에나멜을 칠한 유리, 무 늻·장식·여러 연 속 도안 장식된 유리)	
132	7113.19 -1000	백금으로 만 든 신변장식 용품	귀금속(금, 은, 백금)으 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 품(제9706호)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 (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 한 경우(예: 테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곶줄 (제911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7108호의 금 등을 주요 원재 료로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 쳐 생산 (다이아 몬드, 큐빅, 은, 백금 등이 함께 사용 될 수 있 음)	
133	7113.19 -2000	귀금속제 신 변장식품 (금으로 만 든 것)	귀금속(금, 은, 백금)으 로 만든 신변장식용품 <제외대상>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7108호의 금 등을 주요 원재 료로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처 생산 (다이아몬드, 큐빅, 은, 백금 등이 함께 사용 될 수 있음)	
134	7114.19-1000	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품 (은 또는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외)	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 귀금속을 도금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제7114.20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35	7114.19-9000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은으로 만든 것, 식탁용의 것 제외)	귀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것(예: 종교용품 등)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 귀금속을 도금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제7114.20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36	7202.11-0000	페로망간 (탄소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2825호, 제2849호 등)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37	7202.19-0000	페로망간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p>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p>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2825호, 제2849호 등)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38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 (ferro-silico-manganese)	<p>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p>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2825호, 제2849호 등)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39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재활용용 스크랩 잉곳 (scrap ingot)	<p>철강제조나 고철제품 해제작업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스테인리스강의 부스러기나 이를 용융한 잉곳</p>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가 아닌 보수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예: 기둥, 선로 등)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그, 드로스, 스케일링과 웨이스트(제2619호) -선철, 스피그라이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국내 제조과정 발생한 부스러기를 수집되었거나 수집한 폐기물 등을 분해하여 리사이클링 기계 등을 이용해 스크랩 등을 선별	외국에서 수입한 스크랩·부스러기는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조각(제7201호)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철강 웨이스트(제2844호)			
140	7208.25-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41	7208.25-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42	7208.2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43	7208.2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44	7208.2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45	7208.2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熱間)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반가공 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46	7208.3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47	7208.3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48	7208.37-1000	<p>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p>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p>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49	7208.37-9000	<p>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p>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p>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50	7208.38-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熱間)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51	7208.38-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52	7208.39-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53	7208.39-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54	7208.51-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55	7208.51-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56	7208.52-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57	7208.52-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58	7208.54-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59	7208.54-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인 것(인장 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60	7209.1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 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161	7209.1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62	7209.1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163	7209.1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연마 같은 단순 표면 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64	7209.18-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 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165	7209.18-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것(제71류)</p> <p>-연마 같은 단순 표면 처리 외 가공한 것</p> <p>-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p> <p>-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p> <p>-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p> <p>-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p>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166	7209.2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제외대상></p> <p>-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p> <p>-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p> <p>-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p> <p>-연마 같은 단순 표면 처리 외 가공한 것</p> <p>-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p> <p>-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p> <p>-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p> <p>-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p>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167	7209.2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제외대상></p> <p>-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p> <p>-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68	7210.12-0000	주석을 도금·도포한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평판압연제품에 주석 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의 표면을 세척, 소둔 후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69	7210.49-1010	아연을 도금·도포한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	평판압연제품에 아연 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상인 것]	(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7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평판 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평판압연제품에 알루미늄·아연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단순한 화학적 표면 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익스팬디드 메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71	7212.40-2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도장 처리된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폭 600mm 미만, 두께 4.75mm 미만)"강(steel)" 정의는 제72류 주 제1호 (라)목 참조"도금·도포·클래딩(피복처리)" 정의는 제72류 총설 참조 -"평판압연제품" 정의는 제72류 주1 (차)목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압연(rolling)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12호 제외)을 일정 폭으로 절단한 후 열처리·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압연 등의 성형공정 또는 기계가공·도금(coating) 공정 필수	단순히 페인트 도포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172	7216.33-4000	H형강 (높이가300밀리미터이	횡단면이 균일한 H형상의 긴 강철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정련, 주조, 압연 공정	중간 제품(Beam Blank)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상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제외대상> -철강 구조물의 구성 부품(제7308호) -철도 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 등(제7302호)	한-인도 CEPA	을 거쳐 생산	공급받아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외
173	7217.10-0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도금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 인지에 상관 없다)]	"강(steel)" 정의는 제72류 주 제1호 (라)목 참조"선" 정의는 제72류 주1 (하)목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재(wire rod) 등을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코팅 등 추가 공정을 거쳐 생산 인발(drawing) 또는 신 선(wire drawing) 공정 필수	
174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스테인리스강" 및 "선(線)"의 정의는 제72류 주1 (마)목 및 (하)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봉재(wire rod) 등을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절단·코팅 등의 마무리 공정을 거쳐 신 선(wire drawing) 공정은 필수	
175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평판압연 제품(폭인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상온(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압연방법으로 생산된 평판(시트, 판, 스트립 등) 모양의 철강제품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 등 반제품이나 일차제품을 원료를 압연하여 생산	제7225호를 공급받아 단순 표면처리 시 적용 제외
176	7227.90-9090	그 밖의 합금강의 봉(고속도강, 실리코망간강, 내열강, 봉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0.0008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	불규칙하게 감아 놓은 코일 형상의 열간압연 합금강의 봉* *제72류 주1(카)규정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7226호 등의 반제품이나 일차제품 형상을 원료로 제강 또는 압연공정 등을 통해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로 한정한다]				
177	7228.50-0000	그 밖의 합금강의 봉 [냉간(冷間) 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기타의 합금강으로 된 기타의 봉(bar and rod) -"기타의 합금강" 정의는 제72류 주1 (바) 목 참조 -"그 밖의 봉" 정의는 제72류 주1 (타) 목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 등의 성형공정을 거쳐 생산 -압출(extrusion) 성형공정 필수	
178	7305.11-1000	철강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 용접하였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 방법으로 용접한 오일이나 가스 수송용 배관 -"관" 정의는 제73류 총설(1)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등으로 성형한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 및 용접(welding) 공정은 필수	
179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관과 프로파일" 정의는 제73류 총설 (1) 및 (2) 참조 -"스테인리스강" 정의는 제72류 주1 (마) 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등으로 성형한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 및 용접(welding) 공정은 필수	
18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용접한 것	"관과 프로파일" 정의는 제73류 총설(1) 및 (2) 참조 -"스테인리스강" 정의는 제72류 주1 (마) 목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을 압출(extrusion)·주조(casting)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평판압연 제품을 프레스 등으로 성형한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후 용접(wel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forging) 및 용접(welding) 공정은 필수	
181	7306.50-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관 및 중공 프로파일 (기타의 것)[(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의 합금강*으로 용접하여 만든 봉이나 관 *제15부 주5 및 제72류 주1(바)규정 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를 주요 원재료로 성형공정, 용접공정을 거쳐 생산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7226호 등의 반제품이나 일차제품 형상을 원료로 제강 또는 압연공정 등을 통해 생산	
182	7307.91-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플랜지(flange)	관의 이음새 부분에 사용되는 철강제 플랜지 <제외대상> -제7308호, 제8481호, 제8547호, 제8714호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강을 주요 원재료로 플랜지 몸체를 단조공정 또는 절단공정을 통해 플랜지 몸체를 만드는 공정을 거쳐 생산	플랜지 반제품을 공급받아 드릴링, 마킹공정 또는 간단한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 제외
183	7307.93-0000	철강제품 (바트(butt) 용접용 연결구)	관 등을 연결하기 위한 바트 용접용 철강제품 <제외대상> -관을 벽에 지지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행거, 피스, 조임용 밴드 등(제7325호 등) -철강제 구조물로 특별히 설계된 것 -탭, 콕, 밸브 등을 결합된 것(제8481호)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의 프레임 조립용의 것(제8714호) -온도조절식 익스팬션 조인트(제83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성형 또는 단조 공정을 거쳐 생산	
184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	철강재질의 탱크(용도 불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설계, 원재료 가공, 원재료 결합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는 상관없음)	<제외대상> -운송수단에 탑재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 (제8609호) -가열이나 냉각용의 통(제8480호) -철도 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 등(제7302호)	한-베트남 FTA	(용접) 공정을 거쳐 생산	
185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 300리터 이하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운반이나 포장 목적의 철강제용기(50ℓ~300ℓ) <제외대상> 컨테이너(제8609호) 및 제4202호, 제9617호, 제7323호, 제7325호, 제7326호, 제830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주조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생산	
186	7312.10-2099	철강(스테인리스강 제외)으로 만든 로프와 케이블(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	강선을 여러 겹 합쳐 꼬아서 강도를 높인 로프와 케이블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을 직접 인발(drawing)하거나, 제7217호 선(wire)을 합사(twist)·연선(wire stranding)한 후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합사(twist)·연선(wire)	이미 완성된 철제 연선이나 케이블에 코팅, 착색 등 단순 공정만 거친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stranding)공정은 필수	
187	7318.15 -1000	머신스크루 (screw)	나선 가공된 머신 스 크루(machine screws)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의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 품으로 주조 (casting)나 단조 (forging)의 방 법으로 성형한 후 절단·밀링 등의 기계가공을 거쳐 생산 단조 등의 성형 공정 및 나선 (threaded) 공정 필수	
188	7318.15 -2000	볼트(bolt)	철강제 볼트 <제외대상> -스크루 네일(제7317 호) -나사식의 캡, 마개(제 8309호) -피아노 등 악기에 사 용되는 부분품(제 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 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 (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 7229호) 등의 제 72류 해당 품목 을 주요 원재료 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 산	볼트 반 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공정 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 외
189	7318.15 -3000	볼트(bolt)· 너트(nut) (세트로 된 것)	<제외대상> -스크루 네일(제7317 호) -나사식의 캡, 마개(제 8309호) -피아노 등 악기에 사 용되는 부분품(제 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 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 (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 7229호) 등의 제 72류 해당 품목 을 주요 원재료 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 산	볼트·너 트 반제 품 및 블 랭크를 공급받아 전조 공 정을 통 해 생산 된 물품 은 원산 지 증명 적용 제 외
190	7318.16 -0000	너트(nut)	철강제 너트 <제외대상> -스크루 네일(제7317 호) -나사식의 캡, 마개(제 8309호) -피아노 등 악기에 사 용되는 부분품(제 9209호) -제9021호의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 7214호),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 (線)(제7217호), 기타 합금선(제 7229호) 등의 제 72류 해당 품목 을 주요 원재료 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 산	너트 반 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공정 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 외
191	7323.93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강으로 만	한-중 FTA,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0000	강으로 만든 기타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	든 주방용 저장 깡통 -“스테인리스강” 정의는 제72류 주1(마)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92	7326.90-90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기타의 철강제품 <제외대상> -철강제 주물제품(제7325호) -철강제 탱크(제7309호, 제7310호)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및 제73류(제7326 제외)를 주요 원재료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 등을 거쳐 생산	
193	7408.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선(횡단면의 최대지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정제한 구리” 정의는 제74류 주1(가) 참조 “선(wire)” 정의는 제74류 주1(바)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4류 정제한 구리의 봉재(wire rod) 등을 다이에 넣고 인발한 후 절단·도금 등의 추가 공정을 거쳐 생산 인발(drawing) 공정 필수	제7407호의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적용 제외
194	7409.11-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 [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반도체 제조용 제외)]	정제한 구리*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 *제74류 주1호(가)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402호 구리 또는 제7403호의 구리를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195	7409.19-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모양이 아닌 판·시트(sheet)·스트립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반도체 제조용 제외)]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모양이 아닌 판·시트나 스트립 *제74류 주1호(가)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402호 구리 또는 제7403호의 구리를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196	7409.21	구리-아연합	구리-아연합금*으로	한-중 FTA,	제7403호의 구리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9000	금(황동)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제74류 소호주1(가) 참조 <제외대상> 두께가 0.15mm 이하인 것(제7410호), 전기 절연한 것(제8544호) 등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아연 합금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197	7409.29-9000	구리-아연합금(황동)으로 만든 코일 모양이 아닌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반도체 제조용은 제외]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제74류 소호주1(가) 참조 <제외대상> 두께가 0.15mm 이하인 것(제7410호), 전기 절연한 것(제8544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403호의 구리-아연 합금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198	7410.11-0000	정제한 구리의 박(뒷면을 보강하지 않은 것)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뒷면을 보강재로 결합하지 않은 것) *제74류 주1호(가) 참조 <제외대상> 두께가 0.15mm 초과한 것(제7409호), 레이블(제4911호) 등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구리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구리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주조, 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생산	
199	7411.10-0000	구리관(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제외대상> -중공 프로파일(제7407호) -관 연결구(제7412호) -플렉시블 튜빙(제8307호) -특별히 기계의 부분품 형태로 제작된 것(제16부) * '정제한 구리'의 정의는 제74류 주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일차 제품의 구리 또는 스크랩, 전기동 등을 용해, 주조, 압출, 인발, 절단, 표면처리하여 관을 만들고 전기분해 등을 통해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	동관(제7411호)을 공급받아 인발공정만 거쳐 생산한 물품은 적용 제외
200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정제한 구리" 정의는 제74류 주1(가) 참조 관 연결구" 정의는 제7307호 해설서 참조	한-아세안 FTA	제74류 정제한 구리의 반제품을 주조(casting)나 압출의 방법으로 성형하거나, 구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엘보(elbow)·슬리브(sleeve)]	<제외대상> 밸브나 탭·콕 등을 갖춘 연결구류(제8481호)		리의 관을 절단·굽힘 등의 기계가공을 거쳐 생산 구조(또는 기계가공) 등 성형 공정 필수	
201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두 줄 이상의 구리선을 꼬아서 하나의 도선으로 만든 것 <제외대상> 전기 절연 전선(제8544호)	한-중 FTA	반제품 형태의 구리를 용해하여 일정 굵기로 압출한 후 꼬아주는 공정을 통해 생산	
202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괴(기타)	<제외대상> -니켈 가루와 플레이크(제7504호) -전기도금용 니켈 양극(제7508호) *‘니켈합금’의 정의는 제75류 소호주1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니켈 광(제2604호) 또는 중간생산물(제7501호로부터 생산	
203	7502.20-0000	니켈 합금괴	니켈-합금*의 잉곳이나 큐브 등의 형상 *제75류 소호주1(나) 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니켈 광(제2604호) 또는 중간생산물(제7501호)로부터 생산 제7503호(웨이스트)원재료로 사용 가능	
204	7601.20-1000	합금알루미늄괴 [캐스팅알로이(casting alloy)]	<제외대상>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제7603호) -알루미늄을 소결하여 얻어진 서멧(제811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스크랩(제7602호), 알루미늄 코일(제7606.92호) 등을 원재료로 합금(용해, 주조) 공정을 통해 생산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7601.10호)을 재료로 생산시 적용 제외
205	7601.20-2000	빌릿(billet)	<제외대상>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제7603호) -알루미늄을 소결하여 얻어진 서멧(제811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스크랩(제7602호), 알루미늄 코일(제7606.92호) 등을 원재료로 합금(용해, 주조) 공정을 통해 생산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7601.10호)을 재료로 생산시 적용 제외
206	7604.21-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프로파일 *제76류 주1(나) 및 소호주 1(나) 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601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반제품 형태의 알루미늄을 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외대상> -구조물(다리, 탑, 지붕 등)용으로 가공한 것		출, 인발, 주조, 단조하여 생산하거나 빌렛 등을 절삭가공한 후 표면처리 등을 통해 생산	
207	7604.29-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profile)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제외]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profile)[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제외] *제76류 주1(나) 및 소호주 1(나) 참조 <제외대상> -구조물(다리, 탑, 지붕 등)용으로 가공한 것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601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반제품 형태의 알루미늄을 압출, 인발, 주조, 단조하여 생산하거나 빌렛 등을 절삭가공한 후 표면처리 등을 통해 생산	
208	7606.12-0000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인 것)]	<제외대상> -두께 0.2mm 이하인 것(제7607호) -익스텐디드 메탈(제7616호) -두께가 폭의 1/10 초과한 것 *‘알루미늄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롤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알루미늄 판·시트·스트립에 플라스틱 필름 합지 또는 도포 공정을 거친 경우 적용 제외
209	7606.92-0000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두께 0.2mm 이하인 것(제7607호) -익스텐디드 메탈(제7616호) -두께가 폭의 1/10 초과한 것 *‘알루미늄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제7606호의 해당하는 원재료로 플라스틱 합지 공정만 거치는 경우 적용 제외
210	7607.11-9000	뒷면을 보강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箔)[보강재 두께는 제외하고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제외대상> -스탬프용 박(제3212호) -식품 밀봉용으로 종이(본질적 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 박(제4811호) -인쇄된 알루미늄 레이블(제4911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늄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한다.(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크리스마트 트리용박(제9505호)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7606호)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여 생산	
211	7607.20-9000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의 박(箔) [보강재 두께는 제외하고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종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의 박(箔) <제외대상> -스탬프용 박(제3212호) -식품 밀봉용으로 종이(본질적 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 박(제4811호) -인쇄된 알루미늄 레이블(제4911호) -크리스마스 트리용박(제9505호)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760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늄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212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管)	-"알루미늄 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나) 참조 -"관"의 정의는 제76류 주1 (마)목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76류 알루미늄 일차제품이나 반제품을 압출하거나, 주조(casting)·단조(forging) 등의 방법으로 성형한 후 절단·코팅 등의 마무리 공정을 거쳐 생산-압출(extrusion) 등 성형공정 필수	
213	7610.90-9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	알루미늄재료의 구조물(건물, 탑, 다리 등)을 구성하는 부품 <제외대상> -수상구조물(제89류)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제16부(기계)·제17부(수송기기)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성형하여 주조하거나 봉이나 판, 판재 등을 절단, 가공하여 생산	
214	7801.10-1000	납의 괴(정제한 것으로 납의	<제외대상> -가루와 플레이크(제780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천연의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7801.91 또는 7801.99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정제한 납'의 정의는 제78류 소호주 제1호 참조		납 웨이스트나 스크랩(예: 폐전지 등) 등을 분리, 환원, 주조 등 재용해하여 생산	호의 납생물품은 적용 제외
215	7801.10-9000	납의 괴 (정제한 것으로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가루와 플레이크(제7804호) * '정제한 납'의 정의는 제78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천연의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 웨이스트나 스크랩(예: 폐전지 등) 등을 분리, 환원, 주조 등 재용해하여 생산	7801.91 또는 7801.99 호의 납생물품은 적용 제외
216	7801.99-2090	납의 괴 (기타의 것으로 정제한 것은 제외)	<제외대상> -가루와 플레이크(제7804호) * '정제한 납'의 정의는 제78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제7801호의 납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적용 제외
217	7901.11-0000	아연의 괴 (합금하지 않은 것으로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제외대상> -가루와 플레이크(제7903호) * '합금하지 않은 아연'의 정의는 제79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아연광을 제련하거나 아연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아연 괴 (제7901.12호)를 사용하여 순도만 높은 공정만 경우 적용 제외
218	7901.12-0000	아연의 괴 (합금하지 않은 것으로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제외대상> -가루와 플레이크(제7903호) * '합금하지 않은 아연'의 정의는 제79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아연광을 제련하거나 아연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219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외대상> -원료가 아닌 보수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예: 기둥, 선로 등) -아연 제조 시 생기는 슬래그, 회, 전기도금 시 침전된 슬러지나 금속 잔재물(제2620호) -아연 웨이스트를 재용해하여 덩어리 형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국내 아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아연 부스러기를 수집하거나,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기계 등을 이용해 아연을 선별 분리	외국에서 수입한 스크랩·부스러기는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태로 주조한 것(제 7901호)			
220	7904.00-3000	아연 선(線)	<제외대상> -용제물질이 도포된 것(제8311호) * '선'의 정의는 제79류 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황화광(아연광)이나 탄산염광 등을 열환원, 전해법 등을 통해 추출하거나 아연의 피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생산	
221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	세라믹(ceramic) 분말과 금속(metal) 분말을 압축하여 성형한 봉-"서멧"의 정의는 제15부 주 제4호 참조	한-아세안 FTA	세라믹스와 탄화텅스텐(제2849호), 코발트(제8105호) 등의 분말을 배합하여 성형한 후 소결(sintering)하여 생산 성형(forming)·소결(sintering) 공정 필수	
222	8302.10-0000	경첩	창문이나 가구의 문짝을 여닫는 연결부위에 회전축의 역할을 하는 비금속제 부착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223	8302.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카스터(castor)	카스터(castor)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 수도 있다(귀금속은 제외한다). 공기를 넣은 타이어(tyre)를 가진 카스터(castor)의 경우, 카스터의 직경은 보통의 기압을 넣은 타이어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 살(spokes)의 존재는 카스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호의 용어나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카스터는 제외한다(예: 제87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적용 제외
224	8302.30-0000	비(卑)금속제 차량용 부착구	차량에 사용되는 비금속제* 범용성 부착구(예: 손잡이, 봉, 브레이크 등) *제15부 주3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적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용 제외
225	8302.42-0000	비(卑)금속제 가구 부착구	가구에 사용되는 비금속제* 범용성 부착구(예: 문고리, 꺾쇠, 파스너 등) *제15부 주3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卑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적용 제외
226	8403.10-1000	보일러(유류를 사용하는 것)	유류를 연료로 중앙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장치	한-중 FTA	열교환기, 버너, 펌프, 모터, 외피, 화실 등을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227	8403.10-3000	보일러(가스를 사용하는 것)	가스 연료로 중앙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장치	한-중 FTA	열교환기, 버너, 펌프, 모터, 외피, 화실 등을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228	8412.21-1000	액압실린더	유압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 <제외대상> -유압식의 자동도어개폐기(제8302호) -차량용 서스펜션 쇼업쇼바(제8708호)	한-중 FTA	제72류 철강 및 제73류 철강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전장가공, 내경가공, 용접, 세척, 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229	8413.30-4000	액체펌프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연료·윤활유 공급용이나 냉각냉매용 펌프)]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펌프, 엔진오일펌프, 냉각수펌프 <제외대상> -액체용의 살포기, 분사기(제8424호) -수동식의 그리스 건(제8205호) -압축공기식의 그리스 건(제8467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연료펌프는 바디, 플린저, 플린저 스프링, 푸시로드, 체크밸브 등으로 구성, 워터펌프는 임펠러, PULLEY, 베어링, 고무셀 등으로 구성, 오일펌프는 구동로터와 폴리, 기어 등으로 구성	
230	8413.30-9000	연료·윤활유 공급용이나 냉각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항공기, 기관차용, 선박용, 자동차용 제외)]	엔진(내연기관)의 기계적 운동을 압력으로 바꾸는 피스톤형 액체 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 요소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로터, 스타터, 샤프트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231	8413.81-9000	기타 펌프 (수영장용)	액체를 압축해서 이송하는 기타의 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 요소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펌프는 제외)			로터, 스타터, 샤프트, 임펠러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232	8414.30-1000	냉장·냉동설비용 압축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냉장, 냉동고 등에 사용되는 기체용 압축기(11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 요소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로터, 스타터, 샤프트, 임펠러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233	8414.59-9000	기타의 팬(출력 12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갖춘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과 항공기용, 그리고 자동차차리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날개를 통해 공기를 배출하여 환기하거나 열을 식히는 장치 -출력 12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갖춘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은 제 8414.51호에 분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사출 또는 비금속재 주물공정 등을 통해 생산된 팬에 모터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 반제품으로서 통칙 2(가)에 따라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번에 분류
234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체(연기, 냄새)를 흡입하여 배출하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임펠러, 모터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 반제품으로서 통칙 2(가)에 따라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번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에 분류
235	8414.80-9190	그 밖의 기계 펌프(항공기용 제외)	제8414.10호~제8414.30호를 제외한 그 밖의 기계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 반제품으로서 통칙 2(가)에 따라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번에 분류
236	8414.80-9210	기계 압축기(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74.6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저,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37	8414.80-9220	그 밖의 기계 압축기(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74.6킬로와트 이상~373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저,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38	8414.80-9230	그 밖의 기계 압축기(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373킬로와트 이상)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저,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할 경우 적용 제외
239	8414.80-9900	기타의 팬·후드 등	제 8 4 1 4 . 1 0 호~8414.80-9230호의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40	8415.10-2010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공기의 조화(냉방, 난방, 제습, 청정)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조합시킨 장치로, 벽에 고정하는 형태 <제외대상> -제7322호, 제8516호, 제8479호, 제8418호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41	8415.10-2020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실내 온도와 습도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 <제외대상> -철강으로 만든 비전기식의 방열기나 온풍 배분기(제7322호) -전기식(히터) 라디에이터, 전기식(히터) 난방기(제8516호) -가습기나 제습기(제8479호) -공기조절용 냉각기(제8418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242	8415.10-9020	공기조절기(창형·벽형 제외)(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기의 조화(냉방, 난방, 제습, 청정)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조합시킨 장치로 벽이나 창 이외의 곳에 고정하는 형태 <제외대상> 제7322호, 제8516호, 제8479호, 제8418호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43	8417.10-2010	철강 처리용 노나 오븐 [배소(焙燒)]	철강제조에 사용되는 용해로나 소둔로 등의 노(爐)나 오븐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예열로 제작, 본체제작, 소입유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 제작 등을 통해 생산	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반 있는 제 품 제품을 공급 받 아 생산 할 경우 적용 제 외
244	8418.10-1030	냉장고 등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식품이나 약품 등을 저온에서 보관하기 위한 장치 <제외대상> -한제(freezing salt)용 냉동고(제8479호) -열교환 방식(water flow)의 냉각기 (제8419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도어, 내부선반, 온도 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245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 액체를 증류시켜 비교적 순수한 것을 얻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탱크나 증류탑(column), 이송관 등의 구조물을 만들고 유량계나 밸브, 펌프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 제 품 형 태 나 대 능 을 기 행 할 수 수 있는 수 있는 반 제 품 제품을 공급 받 아 생산 할 경우 적용 제 외
246	8419.50-9000	열교환기(항공기용,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제외)	금속관 전열벽 등을 통해 높은 온도의 유체로부터 낮은 온도의 유체에 열을 전달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프레임, 열교환부(관, 코일 등), 커버 등의 구성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 제 품 형 태 나 대 능 을 기 행 할 수 수 있는 수 있는 반 제 품 제품을 공급 받 아 생산 할 경우 적용 제 외
247	8420.10-9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 제지용, 직물용, 가죽용, 고무용·플	얇은 시트 형상의 종이나 섬유, 가죽, 플라스틱의 표면을 마무리하거나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압 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품인 실린더, 부분품을 조립하여 생산 -경우에 따라 냉각이나 가열장치가 결합될 수 있음.	완 제 품 형 태 나 대 능 을 기 행 할 수 수 있는 수 있는 반 제 품 제품을 공급 받 아 생산 할 경우 적용 제 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라 스틱 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용은 제외한다)				
248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필터)	차량의 내연기관용 오일 또는 연료 필터를 위한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 또는 플라스틱 몸체 및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제4812호)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 등을 원재료로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필터 엘리먼트에 단 순 히 보강판이나 캡 등을 석우는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적용 제외
249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노즐 등을 통해 병이나 탱크, 식기 등을 세정하거나 건조용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가공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50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용·봉지용 기계	병이나 용기의 틸, 구멍을 봉하여 붙이는 거나, 뚜껑을 잠그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이송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251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침부용 기계	인쇄된 상표 등을 용기에 부착하거나 병입구(예: 와인) 등에 호일 등으로 캡슐링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조 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52	8422.40-4000	열수축 포장 기계	열가소성 필름(PP, PE 등)을 이용해 제품을 포장하고, 열을 가해 표면에 밀착시키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조 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53	8422.40-9010	자동포장 기계	자동으로 제품(예: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을 포장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조 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54	8422.40-9020	자동결속기	자동으로 제품(예: 목재, 시트, 박스 등)을 끈 등으로 묶어주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조 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55	8422.40-9030	진공포장기	다양한 제품(예: 식품, 약품, 공업부품, 반도체 등)을 진공상태로 포장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조 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56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불을 끄기 위해 소화약제(인산암모늄 등)나 가스(CO ₂)를 압력 용기에 넣은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노즐, 손잡이, 밸브, 용기, 캡 등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우 적용 제외
257	8438.20 -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각종 제과 공정(반죽, 성형, 발효등)에 사용 되는 산업용 기계 <제외대상> 가정용 또는 포장용 (주입), 제분용, 오븐, 여과기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물 등의 공정을 통해 성형기 나 반죽기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58	8474.80 -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주형틀을 이용해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기계 *재료 : 가루나 페이스트 형상의 세라믹, 석고, 시멘트 등 광물성 생산품 <제외대상> -금속, 유리, 플라스틱 성형기(제8480호, 제8475호, 제8477호) -도자기, 콘크리트 등 공작기계(제8464호) -범용성프레스(제8479호) 등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59	8477.20 -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예열된 재료*를 좁은 구멍에 밀어서 뽑아내는 방법으로 성형하는 기계 *재료 : 플라스틱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60	8477.40 -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진공상태에서 재료*(예 : 판)를 형틀에 눌러서 성형하는 기계 -사출성형기와 압출기를 제외한 기타 열성형기 *재료 : 플라스틱, 고무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61	8477.80 -0000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성형기)	진공·사출성형기, 압출기, 그 외 열성형기, 이너튜브 성형기 등을 제외한 기타의 플라스틱·고무 가공용 기계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나 압출기를 제외한다)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62	8479.81-3000	권선기	전기 케이블이나 금속 케이블을 보빈 등에 감는 장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전기 모터 (제 8501.40호), 센서 (제 8538.90호), 부분품 (제 8479.90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각 파트 및 완제품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263	8479.82-1000	혼합기	둘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 힘을 이용해 혼합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유압시스템, 믹싱, 플랫폼, 탱크 등의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64	8479.82-4000	교반기	둘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 힘으로 휘저어 균일한 상태로 혼합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유압시스템, 교반, 플랫폼, 탱크 등으로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65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유압장치에서 오일의 압력이나 유량, 흐름 등을 제어하는 밸브 <제외대상> -내연기관용 흡입/배기밸브(제8409호) -증기기관용 슬라이드 밸브(제8434호)	한-중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밸브 몸체부분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밸브 부분품에 가스킷, 스프링 등을 조립하여 생산	
266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공압장치에서 공기압력이나 유량, 흐름 등을 제어하는 밸브 <제외대상> -내연기관용 흡입/배기밸브(제8409호) -증기기관용 슬라이드 밸브(제8434호)	한-중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밸브 몸체부분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밸브 부분품에 가스킷, 스프링 등을 조립하여 생산	
267	8481.30-0000	체크 (논리 턴)밸브	배관에 설치되어 유체의 역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한-중 FTA	몸체, 커버, 가이드, 디스크, 고정장치, 개스킷 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을 조립하여 생산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68	8481.40-0000	안전밸브	압력 배관에 설치되어 일정 압력 이상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한-중 FTA	몸체, 커버, 스프링, 개스킷, 디스크, 고정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69	8481.80-1010	밸브(전기 작동식의 것)	감압·체크·안전밸브 및 유압·공압 전송용 밸브를 제외한 기타의 전기작동 밸브	한-중 FTA	바디, 플랜지, 코일, 스프링, 디스크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70	8481.80-1030	밸브(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감압·체크·안전밸브 및 유압·공압 전송용 밸브를 제외한 기타의 자동제어 밸브	한-중 FTA	바디, 플랜지, 코일, 스프링, 디스크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71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배관에 설치되어 유로의 개폐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	한-중 FTA	플라스틱 사출 또는 비금속재 주물공정 등을 통해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72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외륜과 내륜 사이에 볼을 넣어 윤활 효과를 내는 장치 <제외대상> ·베어링과 하우징이 결합된 것(제8483호) ·자전거용 허브(제87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273	8482.10	볼 베어링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한-중 FTA,	철강재를 주조	완제품 형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9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제외)	하는 축에 결합되어 기계부품의 마찰을 줄여주는 장치 -전동체:볼 <제외대상> ·베어링과 하우징이 결합된 것(제8483호) ·자전거용허브(제871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74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에 결합되어 기계 부품의 마찰을 줄여 주는 장치 -전동체 : 원추형 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75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에 결합되어 기계 부품의 마찰을 줄여 주는 장치 -전동체 : 니들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76	8483.10-9010	전동축 [캠 샤프트(cam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 포함]크랭크(crank)(제87류 차량용)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차축 <제외대상> -프로펠러 샤프트, 하프샤프트, 구동차축(drive-axles) 등(제8708호)	한-중 FTA	철강재를 단조공정, 열처리, 표면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	
277	8483.30-900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항공기용 제외](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베어링을 감싸 축에 고정시키기 위한 프레임(필로우형, 플랜지형 등)	한-중 FTA	압연, 프레스, 선삭가공, 컴퓨터수치제어(CNC)가공 등을 거쳐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bearing) 제외)				
278	8483.40-9010	기어	전동축과 물려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제외대상> -반제품 형태의 단조품(제7207호)	한-중 FTA	제72류 철강을 절삭 또는 성형하여 생산, 또는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원료로 사출 성형하여 생산	반제품 또는 블랭크(제8483호)을 원재료로 정밀 절삭공정만 거쳐 생산된 물품은 적용 제외
279	8483.50-900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로서 항공기용 이외의 것	-(플라이휠) 축의 회전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한 바퀴(플라이휠, 커버, 플렌지, 스프링, 베어링 등으로 구성) -(풀리) 동력 전달을 위해 로프를 걸어 회전시키는 바퀴	한-중 FTA	제72류, 제73류의 철강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플라이휠이나 풀리의 몸체를 압연, 단조, 프레스, 선삭가공, 컴퓨터수치제어(CNC)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8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제외대상> -롤러 등이 결합된 컨베이어 벨트용 전동기(제8431호) -전자식의 진동 전동기(제8479호)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제85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전기자, 정류자, 브러시 등과 같은 전동기의 구성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우징 등 일부 구성요소가 불완전하지만 전동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라면 제외)	
281	8505.19-1000	전자석, 영구자석(산화철의 것)	자성을 가진 전자석과 영구자석 <제외대상> -가루형태의 자성 페라이트(제3824호) -의료용으로 설계된 전자석(제9018호)	한-중 FTA	제2821호의 산화철 등을 주원재료로 성형, 소결공정을 거쳐 생산	
282	8505.19-9000	전자석, 영구자석(금속으로 만든 것과 산화철의 것 제외)	자성을 가진 전자석과 영구자석 <제외대상> -가루형태의 자성 페라이트(제3824호) -의료용으로 설계된 전자석(제9018호)	한-중 FTA	제2821호의 산화철 등을 주원재료로 성형, 소결공정을 거쳐 생산	
283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축전지	납음(-)극, 이산화납음(+), 황산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만든 엔진 시동용 축전지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납 등을 도포하여 양극판, 음극판을 만들어 전조에 격리판, 단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제외대상> -수명이 끝난 축전지와 웨이스트(제8548호)		자 등을 조립하 여 생산	
284	8507.60 -2000	리튬이온 축 전지(전기차 용)	<제외대상> -1차 전지(제8506호) -수명이 끝난 축전지 와 웨이스트(제8548 호)	한-중 FTA	양극재(리튬코발 트산화물, 제 2853호), 부극재 (탄소, 제3801 호), 바인더, 도 전재, 구리, 분리 막, 알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 팩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리 튬 배터 팩을 생 산하는 경우 적 용 제외
285	8507.60 -3000	리튬이온 축 전지(에너지 저장장치용)	<제외대상> -1차 전지(제8506호) -수명이 끝난 축전지 와 웨이스트(제8548 호)	한-중 FTA	양극재(리튬코발 트산화물, 제 2853호), 부극재 (탄소, 제3801 호), 바인더, 도 전재, 구리, 분리 막, 알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 팩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리 튬 배터 팩을 생 산하는 경우 적 용 제외
286	8507.60 -9000	그 밖의 리 튬이온 축전 지	<제외대상> -1차 전지(제8506호) -수명이 끝난 축전지 와 웨이스트(제8548 호)	한-중 FTA	양극재(리튬코발 트산화물, 제 2853호), 부극재 (탄소, 제3801 호), 바인더, 도 전재, 구리, 분리 막, 알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 팩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리 튬 배터 팩을 생 산하는 경우 적 용 제외
287	8507.80 -0000	그 밖의 축 전지	연산(鉛酸), 니켈-카드 뮴, 니켈-수소합금, 리 튬이온 축전지 제외한 그 밖의 축전지 *전기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했다가 필요시 전 기로 재생하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양극재(리튬코발 트산화물, 제 2853호), 부극재 (탄소, 제3801 호), 바인더, 도 전재, 구리, 분리 막, 알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 팩	축전지를 공급받아 충전용 리 튬 배터 팩을 생 산하는 경우 적 용 제외
288	8514.40 -9000	그 밖의 전 자유도식이 나 유전손실 (dielectric loss)식 가열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 는 유도 전류를 열원 으로 이용하는 가열기 나 유전체에 교류 자 기장을 발생시켜 유전	한-중 FTA	주요 부분품 및 각 구성요소를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기	체 속에서 열이 손실되는 원리로 작동하는 가열기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적용 제외
289	9001.30-0000	콘택트렌즈	눈의 각막에 붙여 사용하는 렌즈	한-아세안 FTA	제29류 수용성 폴리머 등을 몰드에 성형(molding)한 후 연마·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광학적 특성이 부여되는 성형(molding)·연마(polishing) 공정 필수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290	9001.50-1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빛을 모으거나 분산시켜 광학적 상을 맺게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 <제외대상> -안경렌즈의 블랭크(blanks)	한-아세안 FTA	제29류 수용성 폴리머 등을 몰드에 성형(molding)·경화한 후 연마·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광학적 특성이 부여되는 성형(molding)·연마(polishing) 공정 필수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291	9001.90-1000	프리즘	빛의 분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한 광학장치 <제외대상>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유리거울(제7007호) -도로·교통 표지판용 유리(제7014호) -안경용·시계용 유리(제7015호) -램프나 조명기구용 반사경 등(제9405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유리나 석영을 설계된 굴절률과 반사각 등에 맞춰 재단, 연삭, 면취 가공하거나, 플라스틱 등에 광학적 물질 등을 도포하거나 접착하여 생산	
292	9001.90-3000	그 밖의 렌즈(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편, 콘택트 렌즈, 유리로 만든 안경 렌즈,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 렌즈, 프리즘, 반	빛의 분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한 광학장치 <제외대상>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유리거울(제7007호) -도로·교통 표지판용 유리(제7014호) -안경용·시계용 유리(제7015호) -램프나 조명기구용 반사경 등(제9405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유리나 석영을 설계된 굴절률과 반사각 등에 맞춰 재단, 연삭, 면취 가공하거나, 플라스틱 등에 광학적 물질 등을 도포하거나 접착하여 생산	

연 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비고
		사경 제외)				
293	9603.29 -0000	기타 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 래쉬 (eyelash) 브 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 인 화장용 브러시	솔(brush)로 모발을 손질하기 미용기구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39류 플라스틱 등 일차제품을 용해(melting)·사 출하여 손잡이 등의 구성 부품 을 만들고, 브러 시(brush) 등을 삽입하여 생산· 사출 등의 성형 (molding) 공정 및 브러시 (brush) 삽입 공 정 필수	구성 부 품을 제 조하지 않고 단 순 조립 만 하는 경우 적 용 제외

[별표 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이스라엘과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별표 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CERTIFIED TRUE COP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 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자격 시험 운영	합격 기준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 과목 (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 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 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 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
	출제 위원	<p>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각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통상 관련분야(경제, 경영, 무역, 법학)에 대한 연구 논문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시험과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작성 예				
1.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12345-16-678901M				
2.수입신고수리일자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수리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3.수입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신청의 종류	○ 인증요건 해당란에 “√”를 기재합니다.					
	작성요령	작성 예시				
	- 란 사항 정정인 경우: - 란 삭제인 경우: - 란 추가인 경우: - 란 사항 정정 및 란 추가인 경우:	- U, X, X - X, D, X - X, X, I - U, X, I				
5. 신청일자	○ 신청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6. 정정신청 사유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7. 란 사항 변경내역	○ 란 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내역을 기재합니다.					
	<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01N200603010001	SCC01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란 번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란번호를 기재, 란추가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공통사항은 '000' 을 기재 - 구분부호 : [란정정인 경우] 기재안함, [란삭제인 경우] '99D' 기재, [란추가인 경우] '99I' 기재 - 항목번호 : [란정정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 항목명 : [란정정인 경우] 항목명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명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현지확인 통지서

문서번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현지확인일자			
방문자	(직위)	(성명)	(연락처)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수리일자	
원산지증명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확인할 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을 통지합니다.

2. 위의 기간에 현지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동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현지확인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소재지(주소)	
현지확인 대상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증명서발급 신청번호	증명서발급신청일자
	주소	
요청 사유		
확인할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상공회의소회장 (직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3. 원산지 소명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승인)서

※ 발급기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2. 신청인	구 분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기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3. 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해당 [] (인증번호:)		
4. 신청 협정			
5. 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6. 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7. 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8. 신청일자			
9. 신청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승인번호	
------	--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 ○ 상공회의소 회장 (직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일	품명			원산지		공급 받는 자		10.포괄확인 기간	11.자유무역협정
		3.품명	4.품목번호	5.수량	6.원산지	7.결정기준	8.상호	9.사업자번호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작성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작성(서명)일	○ 원산지확인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품명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4.품목번호(HS No.)	○ 원산지확인서의 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5.수량	○ 해당물품의 총 수량을 기재합니다.
6.원산지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7. 결정기준	○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8.공급받는 자 상호	○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9.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포괄확인기간	○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된 포괄확인 기간을 기재합니다.(다만, 최초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자유무역협정	○ 해당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명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Application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간(Processing duration) 20일(20 days)

1. 신청인 (Applicant)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신청구분(Applicant) [] 업체(Company) [] 관세사(Customs broker)
2. 공급 하는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공급 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 FTA포털에 게시 및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공급 받는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통보 사서함(Post office Box)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Reference No.)

5.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Blanket period] (mm, dd, yyyy ~ mm, dd, yyyy)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 연번 (S/N)	7. 제품번호 (Goods No.)	8. 품명 (Description of Good(s))	9. 적용협정 (Name of FTA)	10. 품목번호 (HS No.)	11.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참고사항(Notice) :

※ 원산지 기준 불충족물품은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을 기재 하세요 (As for goods whose origin criterion is not fulfilled, information such as RVC rate or major process flow is required to be writte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s confirmation on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by Customs Collec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Applicant)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세관장 귀하

(Customs Collector of 00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12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건은 제외한다)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has been properly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2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Only valid for cases in which origin criterion has been fulfilled.)

년 월 일(YYYY/MM/DD)

○○세관장 직인

(Customs Collector of 00 Customs) 직인(Sea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 연번 (S/N)	7. 제품번호 (Goods No.)	8. 품명 (Description of Good(s))	9. 적용협정 (Name of FTA)	10. 품목번호 (HS No.)	11.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

문서번호

세관장 확인 신청번호		신청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보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일간)	
보완요구사유		
보완할 사항		
문의처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2. 위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				
2: Exporter(Name and Address)			3: Im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Declar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1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of origin. 1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요령]

□ 공통 요령

- 원산지신고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 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Issuing Number		· 원산지신고서 일련번호 기재
1. Producer		·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Exporter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Importer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 “UNKNOWN” 기재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 HS번호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한 HS번호(6단위)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 협정 부속서 4 특혜기준 참조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7.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 “KR” 기재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 “CL” 기재
9. Remarks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2.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 자 르 는 선

접수번호 (Receipt No.)	
-----------------------	--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관세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제 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 시행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 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사전심사서 (Notification of Advance Ruling)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승인번호(Approval No.)		승인일자(Approval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대리인(Agent) [] 계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계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수입자 (Im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수출자 (Ex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심사 유형 (Type of Advance Rulings)	원산지(Country of Origin) []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 관세환급·감면(Duty Drawback/Reduction or Exemption)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ing)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ariff Rate Quotas) [] 기타(Other) []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결정내용 및 사유 (Content of Advance Ruling & Reasons)			

주의사항 (Notice)

수입신고 시 이 심사서의 품명·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When imports are declared,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above should correspond to th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in import declaration and those of actual good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Result of advance ruling is notifi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직인
(sea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신청(승인)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한 7일
사전심사서 변경 문서번호		통지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인 구분	수입자 [] 대리인(관세사)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유예신청 대상품목	대상 품명	품목번호(HS No.)
	수량	금액
유예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Attachment)	1.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손해발생 내역 기재서류 3.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 하

승인번호	
------	--

위와 같이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적용 유예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